

● 제318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21]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38]

## 검 토 보 고 서

2023. 4. 26.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이병윤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621)**

**【 문성호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638)**

.....  
의안번호 621, 638

## I. 조례안 개요

### 1. 발의자 및 제안경과

가.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21)

- (1) 발 의 자 : 이병윤 의원 (찬성 40명)
- (2) 발의일자 : 2023년 3월 29일
- (3) 회부일자 : 2023년 4월 3일

나.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38)

- (1) 발 의 자 : 문성호 의원 (찬성 37명)
- (2) 발의일자 : 2023년 3월 29일
- (3) 회부일자 : 2023년 4월 3일

## 2.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21)

- 서울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업장소 지정 범위와 영업허가과정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있음
- 전통시장의 유희부지 상태인 부설주차장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로 전통시장 내 ‘부설주차장’을 추가
- 현재 전통시장 내 부설주차장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절대적으로 금지된 내용을 개정하여, 관련 법령의 요건과 지역적 사정에 따라 영업 여부를 자치구가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함

### 나.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38)

- 쾌적하고 공정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문화 정착을 위해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해 영업장소 지정 및 금지, 영업 허용수량 등을 정하는 한편, 상위법령 개정 및 조례 형식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21)

- 전통시장에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로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구역 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도 가능하게 함(안 제2조제1항제5호)

#### 나.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38)

- 조례 형식에 맞춰 자구를 수정함(안 제1조, 안 제2조제1항, 안 제4조제1항 등)
- 서울특별시장은 해당시설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또는 금지, 영업 허용 수량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2항)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가 첨부서류를 자치구 조례로써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위법령에 따라 본 조례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3조)

### 4. 참고사항

#### 가.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21)

- (1) 관계법령 :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2)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 (3) 입법예고 : 2023. 4. 6. ~ 2023. 4. 10.
- (4)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나.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38)

- (1)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등
- (2)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 (3) 입법예고 : 2023. 4. 6. ~ 2023. 4. 10.
- (4)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 1 개정안의 취지

- 이병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조례”)(의안번호 621)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 내 부설주차장’을 추가하여 개별 자치구에서 지역사정에 맞게 전통시장 등의 부설주차장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또한 문성호 의원이 발의한 ‘음식판매자동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38)은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시장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대한 허가, 금지 및 차량수량 조정권한을 구체화 하여 쾌적하고 공정한 영업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임. 그리고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와 더불어 올바른 입법형식과 표준어 규정에 맞춰 조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 2 개정안의 주요 내용별 검토

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례 연동 개정 (안 제1조), ([의안번호 638](#))

#### 1) 개정안의 내용

- 본 개정안은 본 조례의 법령상 근거가 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춰 조례의 위임 근거 법령을 연동하여 명시하기 위함임.

〈 신 · 구 조문 대조표 〉

현 행	개 정 안 (의안번호 638, 문성호 발의)
제1조(목적) 이 조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a href="#">별표 15의2제9호</a> 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a href="#">별표 15의2</a> ----- ----- -----.

2) 검토의견

-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 조문이 2017년에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입법 체계상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또한 본 조례의 제1조(목적) 조문에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조문의 ‘호’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입법 방식’이 아닌 ‘호를 제외한 포괄적인 입법 방식’을 선택한 것은 빈번하게 개정되는 『식품위생법령』의 특성에 따른 ‘조례 연동 개정문제’를 고려한 것으로서 개정안의 포괄적방식이 입법 경제적으로 바람직해 보임.

〈 현행 · 개정(안) 입법방식 대조표 〉

기존 입법 방식 (구체적 기술)	→	개정 입법 방식 (포괄적 기술)
<a href="#">별표 15의2제9호</a>	→	<a href="#">별표 15의2</a>

나. 서울시 조례로 정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관련  
(안 제2조제1항), (의안번호 621 및 638)

1) 개정안의 내용

- **[의안번호 621]** 본 개정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 내 부설주차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 **[의안번호 638]** 본 개정안은 조례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정할 수 있게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근거 조문이 [별표 15의2제9호]에서 [별표 15의2제10호]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현행 조례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한 장소로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 신 · 구 조문 대조표 〉

현 행	개 정 안 (의안번호 621, 이병윤 발의)	개 정 안 (의안번호 638, 문성호 발의)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b>별표 15의2제9호</b> 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제2조(영업장소) ① (현행과 같음)	제2조(영업장소) ① ----- ----- ----- --- <b>별표 15의2제10호</b> --- ----- ----- ----- ----- -----



<p>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 (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p> <p>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p> <p>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p>	<p>3. (현행과 같음)</p> <p>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구역 및 이를 위한 「주차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p>	<p>----- ----- -----</p> <p>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 -----</p> <p>5. (현행과 같음)</p>
--	---	--

## 2) 검토의견

- **[의안번호 621]** 본 조례 제2조제1항제5호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 내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추가**하는 사항 관련
  - ’20년 1월 코로나19 최초 발생 이후, 서울 소재 전통시장의 체감경기동향지수(BSI)<sup>1)</sup>[표1]<sup>2)</sup>는 대부분 기준점 100을 하회하는 ‘경기 악화’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등 부설주차장에 ‘음식판매자동차’를 활용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1) 소상공인 시장경기동향조사(BSI)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경기동향 및 경영애로요인을 파악하여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경영계획 및 경기대응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월 조사하고 있으며, **BSI 100 이상은 경기 호전, 100 미만은 경기 악화를 의미**

2) 본 검토보고서 p.9 [표1] 참조

출처: 2023년 3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 전통시장 통계만을 추출하여 그래프 자체 제작

[표1](전국·서울) 전통시장 체감경기동향(BSI) 추이 (0≤BSI≤200)



- 또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3) 및 동법 제19조의4제1항제3호4)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5)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거래 장터 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여 일시적으로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등의 부설주차장’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운영할 수 있게 한다면, 자치구 구청장의 판단하에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을 적용해 탄력적으로 전통시장 등 부설주차장 내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3) **주차장법 제2조(정의)**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4)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5)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직거래 장터 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의안번호 638]** 본 조례 제2조제1항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개정사항을 연동하여 반영하는 사항과 본 조례 제2조제1항제3호에 명시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제외하는 사항 관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라, 서울시 조례를 통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위임 근거 조문이 [별표15의2제9호]에서 [별표15의2제10호] 개정됨. 따라서, 이러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연동하여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음으로, 본 조례 제2조제1항제3호에 명시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서 ‘도로법」 제2조제1호6)에 따른 도로’를 제외하는 것은 그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왜냐하면 본 조례 제2조제1항제8호 ‘공공용재산7)’에 이미 도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중복 기재라 판단되기 때문임.
  - 또한 부칙에 ‘영업장소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명시하여 ‘기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서의 영업신고가 수리되어 영업 중이거나 영업자 공모 또는 선정 등 영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한 것은 기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등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6)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歩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2조(도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차도, 보도(歩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1. 차도·보도·자전거도로 및 측도
2.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
3. 궤도
4. 옹벽·배수로·길도랑·지하통로 및 무넛기시설
5.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7) **2022년 공유재산 업무편람 (p.8)** : 공공용재산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 예시: 도로, 제방, 하천, 시도립 공원, 구거, 유수지 등(공공시설, 기반시설 등)

다. 서울시 조례로 정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일정구역에 대한 서울특별시시장의 지정과 금지 및 영업차량수량 조정 권한 구체화 관련(안 제2조제2항), (의안번호 638)

1) 개정안의 내용

- 본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대한 시장의 ‘지정, 금지 및 차량수 조정권한’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의안번호 638, 문성호 발의)
② 시장은 제1항8)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② ----- ----- ----- <u>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특정 지역 혹은 행사 장소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허용 수량을 정할 수 있다.</u>

2) 검토의견

- 첫째, 개정안의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조문은 현행 조례의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와 사실상 그 의미와 법적 효과가 같은 것으로 판단됨.
- 왜냐하면, ‘일정구역 허용장소 지정’이라는 조문에는 ‘지정 외의 장소는 허용이 금지’됨이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임.

8)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각 호 이하 생략

- 또한 실제 현행 조례 동 조문의 ‘음식판매자동차 허용장소 지정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sup>9)</sup>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sup>10)</sup>에 따른 ‘영업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
-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미신고 영업을 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sup>11)</sup>』 및 『동법 제37조제4항<sup>12)</sup>』에 따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금지’라는 문구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현행 조례와 『식품위생법령』을 통해 그러한 법적 효과는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둘째, 개정안의 ‘특정지역 혹은 행사장소’라는 문구 역시 현행 조례 ‘일정구역’이라는 문구로 포섭이 가능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9)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1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생략) ~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1) 식품위생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2제2항, 제17조제4항, 제31조제1항·제3항, 제37조제3항·제4항(영업 미신고), 제39조제3항, 제48조제2항·제10항, 제49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

12)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5조)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5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라.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식점매자 동차 영업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첨부서류’ 규정 삭제 관련 (안 제3조), (의안번호 638)

1) 개정안의 내용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를 ‘서울특별시 조례’가 아닌 ‘각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의안번호 638, 문성호 발의)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장소에 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점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 생 략 )	<삭 제>

2)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2017년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사항(‘17.12.29.)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서 ‘첨부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광역조례)가 아닌 시·군·구 조례(기초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한 만큼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개정 2015. 10. 2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개정 2017. 12. 29.]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 (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 <b>9.</b>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b>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b>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 <b>10.</b>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b>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b>

- 다만, 2017년 상위법령 개정 이후로 현재까지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자치구는 ‘서초구’가 유일함. 따라서 서초구를 제외한 다른 24개 자치구에서는 ‘첨부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자치구 ‘음식판매자동차’ 조례가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입법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각 자치구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 및 서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및 자치구별 ‘음식판매자동차 관련’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안내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다. 현행 조례에 사용된 문장부호, 띄어쓰기, 약칭사용 등을 올바른 입법형식에 맞춰 자구 등을 수정한 사항 (안 제2조제1항, 안 제4조제1항 및 안 제5조제1항 등), ([의안번호 638](#))

#### 1) 개정안의 내용

- 본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례를 올바른 형식에 맞춰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 2) 검토의견

- 정확한 입법 형식 및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에 맞춰 조례를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은 조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 집행기관 의견

- (의안번호 621, 이병윤 의원 발의안) 원안가결
- (의안번호 638, 문성호 의원 발의안) 수정가결
  - 제2조제2항 => 수정가결
  - 제2조제2항 이외의 개정사항 => 원안가결

(의안번호 638, 문성호 의원 발의안) 관련 집행기관 의견

□ 안 제2조제2항 관련 [수정가결]

- 조례안은 일정구역에 대한 영업장소를 금지하고 영업의 수량과 관련 ‘특정지역 혹은 행사장소’ 문구를 넣어 그 내용을 구체화 한 것으로 생각되나,
  - 현 조례에서 ‘허용장소의 지정’은 허용장소를 제외한 타 장소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금지’ 표현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 ‘일정구역’은 넓은의미로 개정안의 ‘특정지역 혹은 행사장’ 뿐만 아니라 기타지역을 포함하므로 해당 조문의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1조,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 등 관련 [원안가결]

- 조례형식에 맞춰 문장부호,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에 맞게 자구 수정 및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시·도지사 권한 삭제)에 따라 제3조를 삭제함이 타당하다 생각됨.

3 종합의견

(의안번호 621, 이병윤 의원 발의안 관련)

-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추가 관련] (안 제2조제1항제5호)
  - 본 개정안은 서울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 내 부설주차장’을 추가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그리고 본 조례개정을 통해 음식판매자동차 ‘운영장소’에 ‘전통시장 등의 부설주차장’이 포함된다면, 추후 개별 자치구에서 구청장의 재량하에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의 해석을 통해 부설주차장 용도를 변경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운영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의안번호 638, 문성호 의원 발의안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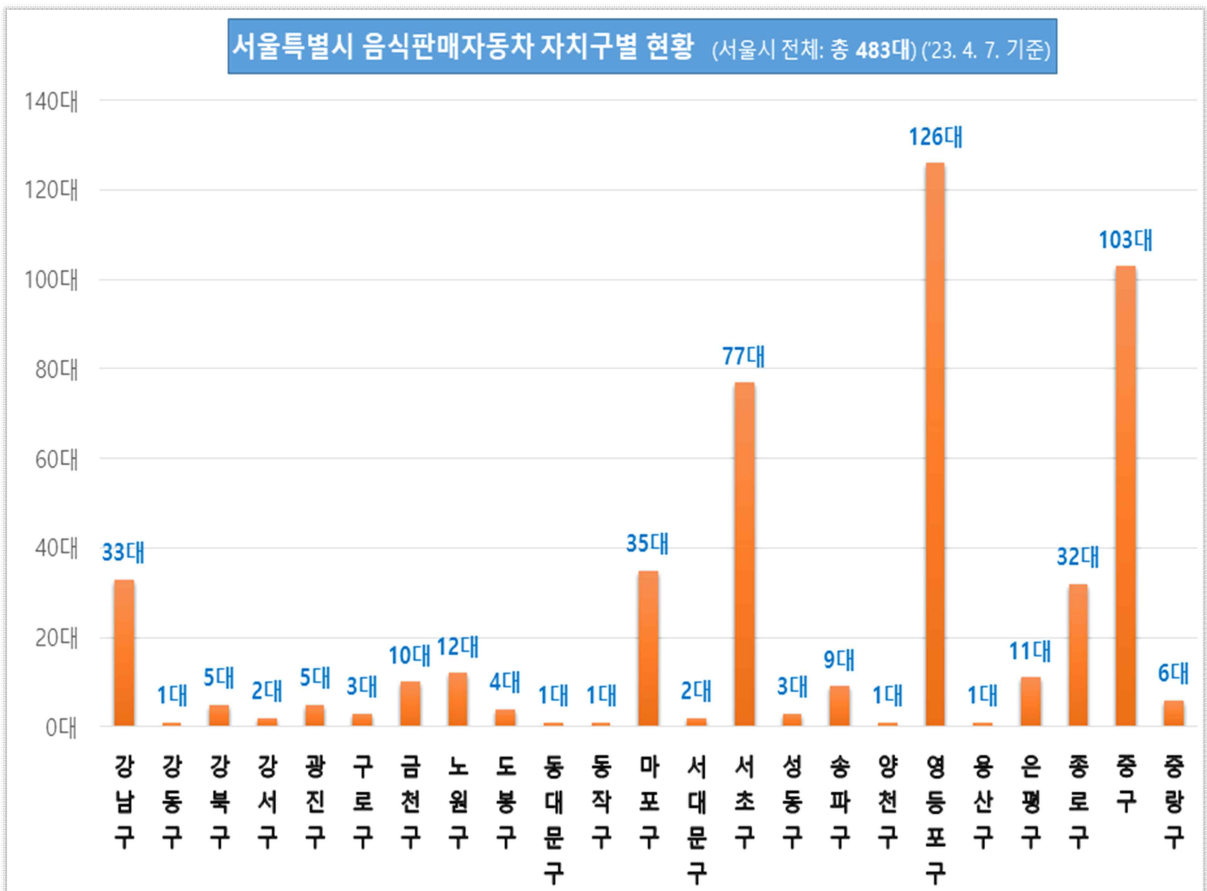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관련] (안 제1조, 안 제2조제1항, 안 제3조 등)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연동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위임 조례 사이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기에 그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3조(첨부서류)의 경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 조례안과 같이 서울시 ‘음식판매자동차 조례’에서 삭제하고 각 개별 자치구 ‘음식판매자동차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만이 ‘음식판매자동차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나머지 24개 자치구는 조례가 미비하여 ‘첨부서류’ 관련 ‘입법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 자치구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및 서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및 자치구별 ‘음식판매자동차 관련’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제정을 촉구하는 것도 필요해 보임.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서 ‘도로’ 제외 관련] (안 제2조제1항제3호)
  - 서울시 조례로 정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제외하는 것은 그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왜냐하면 본 조례 제2조제1항제8호 ‘공공용재산’에 도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중복 기재 사항이라 판단되기 때문임.

- [영업장소 대한 시장의 허가, 금지 및 차량수량 조정권한을 구체화한 사항 관련] (안 제2조제2항)
  - 개정안의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조문은 현행 조례의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와 사실상 그 의미와 법적 효과가 같아 보임.
  - 그리고 현행 조례 동 조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허용장소 지정’을 받지 못하면 『식품위생법령』상 영업신고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현행 조례로도 충분히 ‘금지’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또한, 개정안의 ‘특정지역 혹은 행사장소’라는 문구 역시 현행 조례 ‘일정구역’이라는 문구로 포섭이 가능함에 따라 안 제2조제2항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올바른 입법 형식 및 표준어 규정 사용 관련]
  - (안 제1조, 제2조제1항, 안 제4조제1항 및 안 제5조제1항 등)
  - 정확한 입법 형식 및 표준어 규정 등에 맞춰 조례를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은 조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기타사항)

- 현재 서울특별시의 음식판매자동차 총 운영대수는 483대 (’23.4.7. 기준)이며, 각 자치구별 운영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서울특별시 ‘표준매뉴얼’은 2016년 이후 개정·보완이 되지 않음.

- 따라서, 향후 각 자치구에 ① 매뉴얼 보완사항, ② 상위법령 및 서울시 음식판매자동차 조례 개정사항 및 ③ 각 자치구별 '음식 판매자동차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문 의 처

신현태 입법조사관 (02-2180-8145)